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PM 2:00
-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 공동주최 :

 Womenlink
한국여성민우회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Program

-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PM 2:00
-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시 간	내 용
PM 1:50~	포럼 참가접수
PM 2:00~	<p style="text-align: center;"><u>'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u></p> <p style="text-align: center;">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p> <p>• 발표순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PM 3:30~	전체토론

Contents

내 용	Page
▶ 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5
▶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10
▶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17
▶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9

낙태처벌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1. 낙태처벌법체계

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전면 금지(형법) + 예외적 허용(모자보건법)

<표 5> 형법 상 낙태죄 체계

구분	내용	법정형	
자기낙태죄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1년 ↓ or 200만원 ↓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	임부의 촉탁, 승낙으로 낙태	1년 ↓ or 200만원 ↓	
업무상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임부의 촉탁, 승낙으로 낙태	2년 ↓	7년 ↓ 자격정지 병과
부동의낙태죄	임부의 촉탁, 승낙 없이 낙태	3년 ↓	
낙태치사상죄	업무상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 부동의낙태로 임부를 치사 또는 치상	5년 ↓ (치상) 10년 ↓ (치사)	

나. 합법적 낙태의 요건¹⁾

- 임신 24주 이내일 것
-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것
- 임부 및 법률상·사실상 배우자(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동의를 있을 것
다. 낙태 허용 사유
- 우생학적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²⁾, 전염성 질환³⁾이 있는 경우
- 윤리적 사유: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⁴⁾

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2)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을 말한다.
 - 3) 풍진, 특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말한다.

- 의학적 사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

2. 낙태법, 무엇이 문제인가?

가. 낙태 불법화의 효과

- 오랫동안 낙태는 처벌되지 않았고 산부인과에서도 공공연하게 낙태를 시술하였으나,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병원 고발 사태 이후로 낙태가 어려워짐. 시술 비용 상승, 불법적 약물의 유통, 원정 낙태 등 문제화.
- 낙태 불법화는 법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태의 위험도를 높일 우려가 크며, 낙태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 상담 등 임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배분 필요성 논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 들어 낙태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보듯, 언젠가 처벌이 개시될 수 있음을 의미. 이제 낙태죄는 관계의 파탄에 대한 남성 측의 무기로 활용되는 양상.

나. 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

-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이지만, 이는 모자보건법 상 합법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예) 실제 낙태 사유들: ‘일이나 공부에 방해 우려’, ‘이미 자녀가 있음’, ‘원치 않는 임신’, ‘미혼’, ‘혼전임신이 알려지는 것의 부담’, ‘경제상 양육 어려움’, ‘가족계획’, ‘사회활동 지장’ 등⁵⁾
- 기한규제 도입 논의: 임신 12~14주 이내의 낙태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허용

다.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도하게 축소

-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형량하고자 함. ‘자기결정권’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결정 이후 임부의 삶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못하며, 오로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자유’를 중심으로 인식됨.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이 비록 불안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결정권보다는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결론내리기 쉬움.
→ 낙태할 권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태아의 생명권이 그렇게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생학적 사유, 윤리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기대여명이 짧은 태아, 강간으로 인한 임신, 법률혼 내로 진입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자기결정권보다 생명의 가치가 가볍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인가? 결국 법은 태아의 ‘생명권’을 선택적

4) 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09조)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5) 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75~177쪽.

으로 보호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 임부와 그 가족의 '재생산권'⁶⁾에 대한 강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재생산권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론 내에서 독자적 권리로써 설명되기 어렵고, 재생산권을 구성하는 개별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경우, 생명권과의 관계에서 큰 실익이 없어서 한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의 불완전성,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신체의 필연적 연결성, 임신, 출산, 더 나아가 양육이 여성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실증주의적 접근이 아직은 더 풍부해져야하는 단계일 것.

라. 형사처벌을 통한 규제

- 낙태를 규제하는(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형벌 부과가 아닌 피임의 확대, 출산 지원, 더 나아가 평등 증진을 통해서도 낙태 감소 유발 가능. 여러 방법 중에서 반드시 형사처벌로써 규제하여야 하는가? 낙태는 '범죄' 인가? 낙태를 범죄로 다루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임신을 유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하는 것인가?
- 상담 및 정보 제공 방식 도입 논의(형사처벌과 병행도 가능), 숙려기간의 문제
 - 마. 불확실한 절차
- (준)강간 여부의 확인(강간의 신고나 유죄 판결이 필요한가?), 혼인 불가능한 혈족·인척 사이의 임신 여부 확인(유전자 감식 결과가 필요한가?), 배우자 동의 여부의 확인 절차 미비(혼인 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배우자가 병원에 출석하여야 하는가?)
- 낙태 사유 심사 및 승인 기관 설립 문제
- 시술의와 확인의를 구별하여야 하는가?

바. 제3자의 동의에 좌우되는 처벌

1) 배우자 동의 요구

법률상·사실상의 배우자가 동의하여야 비로소 낙태는 합법.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이 예외가 됨.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함.

배우자 동의 요건은 해석상의 불확실성과 요건 자체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문제됨.

2) 불확실성

- 모자보건법의 해당 조문은 법률상·사실상 배우자의 동의를 요함. 혼인하지 않았거나 사실혼 관계에조차 있지 않은 여성은 태아의 생부의 동의가 불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생부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하여야 하는가?

6) 재생산권은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사회권적 권리”로 설명된다.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 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6권 4호, 2010, 68쪽.

- 기혼여성의 혼외 임신의 경우, 임부는 자신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태아의 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입법 당시 미혼자의 임신, 혼외 임신은 단지 고려 대상이 밖이었던 것은 아닌가?

3) 부당성

- 출산 시 배우자는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 그러나 임부 본인은 낙태를 원하고 배우자는 출산을 원하는 경우, 임부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강제당하는 문제가 발생.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낙태만을 반대하는 사례도 가능.
- 배우자 동의 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에 위험)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동의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우자가 아내가 아닌 태아를 선택한다면, 의사는 살려달라는 임부의 사망 또는 임부의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이 경우는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어 낙태가 합법일 것이지만, 긴급피난을 적용하기 전에도 낙태는 합법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현행 규정은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조차 배제하고 있지 않음. 윤리적 사유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동의하여야 하는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태아의 생부(강간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임신과 무관한 여성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강간 가해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원한다면 여성은 출산하여야 하는 것인가? 강간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자녀를 원하여 아내를 강간하여 (또는 몰래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에 이르게 되었다면 남편이 낙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가?
사. 또 다른 문제들
- ‘우생학’ 적 선택?
‘우생학’ 이라는 용어의 문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부모의 사유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경우’ 로 허용 사유를 상당히 축소하였음.
- 태아의 의학적 사유
현행 규정은 임부 또는 배우자의 장애, 질환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 임부 또는 배우자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없지만 산전 검사 결과 태아의 의학적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낙태할 수 없는 모순 발생. 산전 검사가 불가능하던 시기에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기 때문. (태아의 장애를 사유로 한 낙태의 허용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임)
- 의학적 사유와 24주의 기한
임부의 의학적 사유도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
- 윤리적 사유의 한계
형법상 강간죄, 준강간죄 이외의 범죄로 인한 임신도 윤리적 사유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참고자료>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특징	발의	내용
상담 의무화	김성수 의원안 (의안번호 1805953, 2009.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부의 상담 의무 낙태 수술 전 2회, 수술 후 상담 의사, 조산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일표 의원안 (의안번호 1808153, 201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 설치 • 임부의 상담 의무 수술 전 2회 상담 숙려기간 2일 • 과태료 시술자는 상담확인증 확인, 숙려기간, 임신주수 허용한계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신 12주 내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 강화	박은수 의원안 (의안번호 1804447, 2009.4.3.)	본인·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삭제
	성윤환 의원안 (의안번호 1807252, 200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의, 확인의 분리 • 윤리적 사유 축소 ‘법률상 혼인 불가능한 혈족 또는 인척’→‘3촌 이내의 혈족’ • 허용 사유 증명 강화 우생학적 사유는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로 증명되어야 의학적 사유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 배우자 동의 요건 강화 배우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공문서 등으로 증명해야
	이영애 의원안 (의안번호 1809696, 2010.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 설치 낙태 승인 사유 심사 • 낙태 허용 사유 축소 본인·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 삭제 법률상 혼인 불가능한 혈족, 인척 간의 임신 삭제 임부의 생명 위협(출산이 위협이 되는 경우 추가), (준)강간 사유만 가능 • 기간 등 허용 요건 강화 임부의 생명 위협 사유는 임신 20주 이내, 산부인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료소견서 제출, 수술 승인 받아야. (준)강간 사유는 임신 9주 이내, 고소 후 수술 승인 받아야. • 배우자 동의권 삭제 • 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국·공립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⁷⁾ 활동가

“예전부터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 중절수술을 하는 건 당사자 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더라도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낳았으면 좋겠다고... 낙태가 남성의 문제가 되기 굉장히 힘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우회 남성회원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집담회(2010)

위 내용은 민우회에 진행한 남성 집담회 내용이다.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로 ‘낙태’가 이슈화되면서 초점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남성 회원들을 모아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남성들은 낙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낯설음을 토로했고 자신이 어떤 위치로 이 주제를 논해야 하는지 어려워했다. 집담회는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침묵이 가득했으며 사회자가 난감해했던 기억이 난다. 남성들은 주로 파트너 여성이 임신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에 난감했던 기억, 어디까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 대한 토로, 몰래 임신중절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성주의자 남성으로서 낙태 문제를 어떤 입장으로 말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을 이야기했다.

남성들이 보였던 침묵과 낯섬은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남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임신중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모자보건법 상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동의’ 조항이 이를 만들어 주는 걸까? 그렇다면 이 법에 있는 배우자는 누구인가?

1. 민우회의 상담활동 개요

2010년 ‘낙태’ 고발/단속 조치가 본격화된 그때, 민우회는 시술 병원을 문의하거나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낙태를 강요받고 있는 여성, 남성 파트너에게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여성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상담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담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12건의 상담이 있었다. 상담의 주 내용은

7) 본 글은 김인숙 상임대표, 김희영, 문지은, 류형림 여성건강팀 활동가들과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 비용을 문의하던 것에서 ‘낙태죄’ 를 빌미로 한 협박 및 스토킹 관련 상담이 증가하였다. 2010~2013년의 기간 동안 상담활동을 지속하며 보이는 패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상담 경로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의뢰 후 여성건강팀으로 연결되거나 직접 임신중절 관련 상담가능에 대한 전화 및 메일문의로 진행
- 나) 상담 내용 : 수술가능 병원 및 비용문의, 헤어진 파트너(남편, 애인)의 ‘낙태죄’ 고소협박으로 인한 법적 처벌관련 내용 등
- 다) 지원 내용 : 남성에 의한 고소 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 여성의 경찰조사, 재판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등
- 라) 최근 경향 : 관계가 정리된 후 벌어지는 금전부분에 대한 법적다툼에서 보복성 ‘낙태죄’ 고소, 관계유지에 대한 방법으로 스토킹 및 신체 위협, 협박 증가 등
- 마) 한계점 : 수술병원에 대한 문의의 경우 형법상 불법인 임신중절관련 실질적 지원이 어려움. 사실상 임신중절에 대한 ‘상담’ 이라는 것의 사회적 지원 및 절차의 불명확성. 관계가 종결된 원인이 남성의 폭력 등과 연관되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성차별 가능성 존재 등

더불어 2013년 현재까지 민우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내용적으로 분석해보면 ‘낙태’ 를 이유로 한 고소협박에 대한 내용은 12건의 상담 중 10건에 해당한다. (그 외는 수술가능병원에 대한 문의와 불법낙태약에 대한 문의였다) 실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는 여성의 상담수가 작년 한 해 총 3건이 접수된 것에서 1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낙태고발정국을 이후로 여성에 대한 고소, 고발이 늘어난 것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 접수된 고소 건수가 크게 늘지는 않은 점에서 임신중절 이슈에 대한 지속적 기획, 상담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민우회 활동의 노출이 늘어난 이유일 것이다. 상담경로를 볼 때 인터넷 검색에서 민우회 활동에 대한 기사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는 상담사례가 언론보도⁸⁾ 이후 4건이 있었던 것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여성 낙태 범죄 처리 건수와 처분결과⁹⁾ (2003-2011)>

연도	총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소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003	21	3			3	18	9	7	2			
2004	29	3		1	2	18	4		8	5	1	8
2005	21	1			1	20	8		5	4	3	
2006	21	4		1	3	17	14		3			

8) [한겨레] “계속 안만나주면 고발한다” 남친의 협박수단 된 낙태죄 (최유빈) 2013.06.30 네이버 댓글 1,062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839.html

9) 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2003~2005 : 국가통계포털 “여성범죄자 처분결과(범법별, 처분결과별)(년) 2003-최근] (범죄자 수)”

2006~2011 : 대검찰청 범죄 분석 -여성 범죄 분석 (2007~2012)

2007	13	2		2		9	3		5			2
2008	24	4		2	2	20	11		6	2	1	
2009	27	4			4	21	14		7			2
2010	46	4		1	3	36	18		15	1	2	6
2011	32	6		2	4	22	8		12		2	4

표 <참고자료 : 여성 낙태 범죄 처리 건수와 처분결과> 내용처럼 한 해 임신중절로 인하여 여성이 기소되는 건수는 평균 10건 이하이다. 이 숫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뿐만 아니라 의사 신분의 여성도 포함된 것임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숫자다. 낙태에 대한 여성차별 건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런 애길 어디다 할 수도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전화드린다” 는 말 뒤에 이어지는 그녀들의 경험. 협박을 하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는지 후회스럽고, 창피하다” 는 말을 들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정적인 불안에 대한 동감과 임신중절을 했다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지지와 법적다툼이 이뤄질 때 동행하는 등의 것들이었다.

2. ‘낙태’ 에 대한 남성협박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한 ‘낙태’ 에 대한 남성의 협박과 관련한 상담을 볼 때 남녀 간의 ‘이별’ 은 지극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어느새 다시 ‘사건’ 이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몇 가지 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왜 낙태를 이유로 협박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관계유지’, ‘금전적 요구’ 이다.

1) 관계유지를 위한 낙태죄 협박 : 상담사례

■ 4월, 30대 여성, 전화상담

: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중절수술(작년 초 8주)을 했던 것을 이유로 협박. 본래 유산의 위험이 있었음. 그러다 수술하러 병원에는 친구랑 같이 갔고 남자친구와 수술 관련해서는 얘기 나누지는 않았음. 그러다 헤어지자고 하니 싫다면서 이전에 임신했던 사실에 대해 다시 얘기하게 됨. 그 과정에서 중절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협박.

■ 7월, 30대 여성, 전화상담 및 경찰조사 동행

: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걸 알고 몇 년 전 중절수술비 지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낙태죄로 고소함. 이후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남성이 다시 서를 찾아갔으나 이미 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조사 진행. 낙태가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술을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됨. 경찰조사 당일 상황은 남자가 직장에 전화해서 경찰인척하며 직장에 사실을 알려 대응여부를 고민했던 상황이었지만 이후 관련연락 없었음.

: 9월 경 다시 전화연락 음. 경찰조사 이후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남자의 스토킹이 더욱 심해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쪽으로 스토킹관련 상담연결.

■ 7월, 30대 여성,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결혼을 약속한 후 해외에서 살기로 하여 여성은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으나 반복해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헤어지기로 함. 그 후부터 시작된 남성의 스토킹과 연애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줬던 생활비 명목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이유로 다수의 소송 진행 중. 이 과정에서 계속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했으나 곧 경찰조사연락이 올 것이라 협박. 다시 만남을 이어갈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함.

: 8월 경 다시 전화연락 음. 낙태과정에서 병원에 함께 동행 했던 점, 불법낙태약을 구해 여성에게 전한 점 등을 이유로 신고는 못한 거 같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다른 법적 싸움진행 중.

2) 금전적 요구를 위한 낙태죄 협박 : 상담사례

■ 4월, 20대 여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메일 상담 후 여성건강팀과 연결돼 전화상담 및 재판동행

: 연인사이였던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혼한 상태. 연애과정에서도 음주 시 폭언, 기물파손 등이 있었으나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결심을 하고 식을 올림. 하지만 반복되는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임신 중절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대한 동의내용에 각서를 작성하였고, 여성은 이를 근거로 수술진행. 이후 결혼 준비과정에서 든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다툼이 시작 됨. 이 과정에서 남성이 불리해지자 낙태수술에 대해 고소함. 재판결과 남성은 낙태방조죄로 여성은 낙태죄로 의사는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최종 판결에서는 피고인 여성 벌금 200만원. 의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의사 징역형은 집행 유예함. 남자 무죄. 현재 항소진행 중.

■ 10월, 30대 여성, 전화상담

: 임신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여러 이유들로 헤어지게 됨. 자연유산 됐으나 남성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 산부인과에 대한 검색기록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함. 그 후부터 여성에게 파혼 책임을 물으며 결혼준비 비용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그 과정에서 남성의 모친이 직장에 찾아와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함. 이후 여성은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맞고소로 초음파사진과 결혼청첩장을 증거로 여성을 낙태로 고소함.

■ 11월, 20대 여성의 어머니, 전화상담

: 20대 여성인 따님이 연애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임신으로 중절수술 함. 이후 낙태사실을 이유로 혼인 신고(결혼식, 동거 없음)를 요구하여 받아드렸으나 헤어지게 되면서 금전적 다툼이 시작되고 남성으로부터 낙태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 여성의 선처요청으로 의사는 기소유예 되었음. 현재 남성의 낙태방조죄 등에 대해 재판이 따로 진행될 예정. 항소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항소하여 의사의 죄도 자기 문책 받아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의 발언에 항소하지 못했음. 또한 해당사건 검사는 최근 저출산을 이유로 낙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입장을 얘기하며 항소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함.

3) ‘낙태’, 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위치

형법 270조 1항 합헌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근거로 언급한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사법부가 임부의 ‘사익’과 태아의 ‘공익’이라는 명명은 여성의 몸을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언제 누구와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8월 9일에는 민우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건이자 남성 협박에 의해 고발당한 여성의 판결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이 보호하는 ‘생명’을 태아에만 한정된 채 여성과 태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양현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모체 안에서 잉태되고 형성되고, 태어나서도 취약한 존재로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는 존재로 성장”한다. 또한 “말할 나위도 없이 임부는 자신과 아이의 장래를 예견하고, 양육 환경을 돌아보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임신 종결을 결정”한다.

한편 9월 22일, 대법원 1부는 임신한 여자 친구에게 낙태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친구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했고, 여자 친구는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최근판례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하거나 종결할 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게 됨과 동시에 법에서 ‘남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남성은 태아와 여성 모두 생명에 위협을 주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낙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남성은 임신을 유지하려는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한 ‘말’ 들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다. 법은 남성의 ‘동의’ 여부를 두고만 법적 처벌을 할 뿐 남성이 여성의 임신유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보고 있지 않다.

4) 배우자 ‘동의’ ?

민우회로 접수된 상담의 대부분은 결혼을 약속했으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었다. 낙태되는 남녀 둘의 관계유지, 여성의 임신유지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이 남성의 폭력, 집착, 스토킹 등과 같은 것에 있더라도 남성은 어느새 여성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한다. 이처럼 남성들에게 ‘낙태’는 ‘관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요구’를 하기 위한 협박, 보복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낙태가 법적인 기준에 따를 때 불법낙태인 상황이라 모자

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책임은 없고 동의만 있는 형태의 배우자 '동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이 조항의 목표는 배우자의 동의가 아니라 '허락'을 거친 낙태이며, 이것은 형법269조인 '낙태죄'가 목표하는 국가의 형벌권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허락'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배우자 동의 항목은 폭력이 있던 상황에서도 병원에 남성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낙태'라는 것이 남녀들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에서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둘의 헤어짐의 과정에서 민사사건으로 이혼 혹은 결혼파기 등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법적 '동의'라는 것이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분담과 사회적 책임분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절 자체의 동의만을 강요한다고 찾아질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동의'한 남성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낙태죄 구성에서 빠져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한 것은 여성 혼자만 져야 하는 것인가? (물론, 여성의 자기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최종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남성의 법적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3. 나가며

1960-70년도에는 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며 소위 '낙태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임신중절수술을 피임방법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 이후에도 중절수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에 대한 고발이 시작되면서 달라졌다. 태아의 '절대생명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낙태'가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알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이전 경험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기도 했으며,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헤매야 했다.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불법 낙태약, 비전문가에 의한 수술 등)과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는 민우회로 접수됐던 여성들의 상담내용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접적인 임신중절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재생산이라는 섹스, 피임, 임신, 출산 혹은 중절, 양육 등 단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낙태'는 해결될 수 없다.

'낙태고발정국'은 "낙태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여성들의 임신중절의 실질적 경험과 삶의 맥락은 삭제시켰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한 '사람'은 전 남편이나, 연애 파트너인 남성이었다. 남성은 대부분 '임신중절'에 관련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 여성들에게 있어 '낙태' 문제는 법과 정책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관계의 문제는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조건들 중 하나인 법과 관련해 다시 얘기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을 것이다.

〈별첨자료〉

※ 임신중절 이슈 관련 민우회 활동

2010. 04~10 : 상담창구 개설. 여성집담회, 남성집담회 진행, 남성체크리스트 작성,
본부-지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이달의 토론
2010. 06. 24 :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2011. 04~10 : 임신중절 유경험자 심층인터뷰, 사례집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제작
2011. 10. 27 : 토론회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개최
UCC <그녀의 하루> 상영, 심리극 <끓는다, 미역국> 공연
- 2012~2013. 1. 27 : 2012 세상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좋은몸, 나쁜몸, 이상한몸 말하기 대회
<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판 임신중절관련 상담 및 사건지원
'낙태죄' 에 대한 남성 혐박 관련 상담 및 사건지원(경찰조사, 재판동행 등)

※ 임신중절 이슈 관련 성명 및 논평 발표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연대활동 포함)

- 2009.11.26 [성명]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 2010.02.03 [성명]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 2010.03.05 [기자회견문]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 2010.04.07 [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 2010.06.07 [입장서]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약체 발족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 2010.06.22 [논평] “임신중절 돕겠다” 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 2010.10.14 [성명]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2010.11.23 [논평] 인권위 ‘낙태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여성민우회 단독)
- 2011.11.10 [기자회견문]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 2012.08.24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2012.11.15 [성명]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3.02.08 [논평] “중국산 불법 낙태약 국내유통 및 원정 임신중절수술 알선 검거” 에 대한 논평
- 2013.08.08 [논평] “대전지법 임신중절 의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라”
- 2013.08.12 [논평] “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낙태' 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형법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1. '임신중단' 에 대한 법 용어의 혼란 속에 누락되는 여성 주체

- 형법에는 낙태(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 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단이 전면 범죄화되어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신중단 방법은 오직 의사에 의한 수술 뿐이며, 이 경우 '수술' 의 주체는 의사이고 여성은 '동의' 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즉, 현재의 법 체계에서 여성은 본인의 임신중단을 결정하거나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 (형법상 낙태죄의 합헌이 결정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사익이 '태아의 생명권' 이라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언급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익인가. 여성은 태아와 분리되는 권리의 주체인가. 태아는 여성과 분리된 권리의 주체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
- 현재 한국의 법 체계 안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니다.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것은 사익으로 치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동의' 조항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의미하고, 공공연히 (여성 과 의료인에 대한)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야 할 것인가.

[참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 아이의 ‘생부’가 아니라 여성의 (법률혼/사실혼) ‘배우자’가 동의의 주체

-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미래와 아기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다. 아기에게 제공될 양육환경, 그 아기가 받게 될 사랑/인정/낙인의 문제, 성인이 된 이후의 삶 까지. 아이에게 제공될 parenting의 양과 질은 당연히 포함되며, 그런 의미에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숙고할 수 밖에 없다.
- 아이의 생부는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섹슈얼리티 과정을 공유한 사람으로, 임신에 대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며, 출산했을 시 사회문화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인 만큼, 임신중단의 과정에도 어느 정도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생부와 의 관계가 출산 혹은 임신중단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이의 생부 동의가 아니며, 여성의 ‘배우자 동의’이다. 이 경우 보호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결혼관계 그 자체이다. (배우자동의의 예외조항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라는 것은 사실상 결혼관계가 파탄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만약 임신중단에 있어 남성의 위치를 법제화함으로써 남성들에게 ‘아버지노릇’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이 우선 임신중단 결정과 요청의 주체가 되고, ‘태아의 생부’의 협의를 필수요건화 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 (고지와 협의의 과정을 의무화. ‘동의’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 물론, 임신중단의 (제한적) 비범죄화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3. 여성의 재생산권, 어린이의 권리,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

- 임신중단의 문제는 섹슈얼리티와 출산 이후의 양육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없이 선불리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구도는 임신한 여성과 임신된 태아를 각기 분리된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으로, 임신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구도이다. 낙태권을 둘러싸고 미국 정치계가 만들어 놓은 pro-choice vs pro-life 구도를 그대로 한국사회에 가지고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은, 이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 겪을 삶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만약 ‘정상가족’ 밖의 아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아기, 가난한 싱글맘이나 부부의 아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때에도, 여성이 본인의 일부로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생명과 관계를 끊고자 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문제에 여성의 권리 이상의 어떤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면 남성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태아의 권리가 아니다)가 되어야 하며, 이는 배우자로서 여성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태어날) 아동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조건 하에서의 ‘생부의 권리’ 일 뿐이다.
- 한국 여성의 재생산은 인정없는 자율성, 권리 없는 책임, 위험부담의 여성전담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총체적 상황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끝)

2013.11.07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 ■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혜령 변호사님의 발표문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노출로 인해 첨부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